

중소기업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2013-00호
의결 연월일	2013. 4. (제 00회)

심사
사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설·강화 등 규제 심사안

제출자	공공구매제도과장 김대희
제출연월일	2013. 4.

목 차

I. 규제심사(안) 개요1

1. 심사대상 규제 1

II. 규제심사(안)2

1. 규제 내용 2

2. 규제 영향 분석서 4

<붙임>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

<참고>

▶ 공공구매 제도 개요12

I. 규제심사(안) 개요

1. 심사대상 규제 : 총 1건

규제 사무명	강화·신설 규제내용
1 소기업 우선구매 제도 도입	○ 일정금액(23억원) 미만 일반품목(중기간 경쟁품목 외)의 우선구매에 대하여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은 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1억원이상 23억원 미만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이 이루어지도록 구간 설정

II. 규제심사(안)

1. 규제 내용

□ 공공구매 시장은 참여제한의 설정여부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품목과 그 외의 일반품목으로 구분 가능

* 중기간 경쟁품목 :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202개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구매

○ 중기간 경쟁품목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우대제도* 운영 등을 지원한 결과 소기업 수주비율이 73.5%

* 5천만원 미만에 대하여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에 수의계약, 2.3억원 미만 입찰참여 소기업에 신용평가 만점(30점) 부여 등

○ 반면 일반품목(중기간 경쟁품목 외)에 대하여는 소기업 우대제도가 없어 소기업 수주비율이 33.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 따라서 일반품목에서도 소기업 비중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소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 필요

- 이를 위해 1억원 미만의 입찰에 대하여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구간 신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체결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의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p> <p>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 참여자가 2 미만인 경우이거나 2 이상의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p>

2.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 소기업 우선구매 제도 도입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공공구매제도과 ○ 경영판로국장 김홍빈, 공공구매제도과장 김대희, 서기관 심재윤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규제집단) 공공기관 ○ (이해관계자) 공공구매 참여 중소기업 																				
5. 규제 존속기한	○ 공공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지원을 위해 지속되는 사업이므로 존속기한(최대 10년) 미설정																				
6. 신설규제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일정금액(2.3억원) 미만 일반품목(중기간 경쟁품목 외)의 우선구매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은 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이 이루어지도록 구간 설정 																				
7. 규제체계도	<table border="1"> <thead> <tr> <th>내 용</th> <th>주 체</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1억원 미만</td> <td>소기업</td> <td>· 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유찰시에는 중소기업간 제한경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r> <tr> <td>1억원~2.3억원</td> <td>중소기업</td> <td>·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td> </tr> </tbody> </table>									내 용	주 체	비 고	1억원 미만	소기업	· 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유찰시에는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			1억원~2.3억원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내 용	주 체	비 고																		
1억원 미만	소기업	· 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유찰시에는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																					
1억원~2.3억원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㉒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 (배경과 원인)

- 공공구매에서 일반 품목(중기간 경쟁품목 외)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축소
 - 반면 대기업이 배제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제도가 시행 중인 중기간 경쟁품목에서는 중소기업의 낙찰률이 73.5%(‘12년 기준)
 - * 5천만원 미만에 대하여 조합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수의계약, 2.3억원 미만 입찰참여 중소기업에 신용평가 만점(30점) 부여 등
- 일반 품목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 제4조 제2항에서 도입된 중소기업과의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는 구간 설정 필요
 - * 판로지원법 제4조(구매 증대)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항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따라서 중소기업 우선구매가 이루어지는 구간(2.3억원 미만)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인 1억원 미만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구분

< 금액별 중소기업과의 우선조달계약 방법 >

구분	1억원 미만	1억원 ~ 2.3억원	2.3억원 이상
참여대상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일반경쟁

나. 규제의 강화 필요성

- 일반품목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 우대가 거의 없어 대기업 및 중기업과 경쟁한 결과 공공조달 수주비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
 - * 조달청 자료를 기초로 추정한 결과 일반품목에서 소기업 수주비율은 33% 정도
- 그러나 초기 판로개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제도 필요
- 이에 공공구매에서의 소기업의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금액 기준으로 구간을 설정할 필요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가. 규제대안의 검토

- 법 제4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으로부터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판로지원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매방법을 소기업(소상공인), 중기업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 중소기업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중기업으로 구분하는 방법 외의 구분기준은 없음

<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분(제조업 기준) >

구분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50인 미만	10인 미만

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금번 금액구간별 조달계약 체결구간 신설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 구간 신설을 통해 공공구매에서 소기업 구매가 확대되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규제의 적정성

- 공공조달시장은 초기 기업에 대한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
 -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을 두는 것은 경제적 약자보호 측면에서 적정하며,
 - 참여기업이 부족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 평가
 - *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의2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 참여자가 2 미만인 경우이거나 2 이상의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제한함은 불가피하며,
 - 불가피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기업 우선구매 구간 설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나. 이해관계자 협의

-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의견수렴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관련 제도 설명회*('12.6.22) 및 공청회** 실시('12.9.5)
 - *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134명 참석
 - **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 협동조합과 단체 및 중소기업 171명 참석
- 공공기관 대상 소기업 우선구매 설문조사 실시('13.3월)
 -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기업 우선구매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소기업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응답을 제시
- 관계부처 협의 ('12. 6. 29 ~ '12. 7. 8)
 - 재정부, 법제처, 조달청 및 국토부 의견 제시 및 반영
- 입법예고 ('12. 7. 2 ~ '12. 7. 23)
 - 의견 없음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 해당조항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은 정부의 국정철학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 금번 중소기업 우선구매 적용구간 신설(안)에 대해서도 특히 소기업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였던 바,
 - 규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체결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의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

참여자 2 미만인 경우이거나 2 이상의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체결을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한 제조 중소기업등이 3 미만인 경우이거나 3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
2.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한다)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려는 경우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제조 중소기업등 지원을 위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에 대하여 3 이상의 제조 중소기업등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 중소기업등과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할 수 있는 제조 중소기업등의 추천을 해당 조합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조합에서 추천하는 제조 중소기업등 중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③ 제3항에 따라 제조 중소기업 등이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횟수 및 납품금액의 연간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공구매제도 개요

- 공공구매는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매에 적용되는 제도를 총칭

□ 적용법령

- 공공구매의 절차, 계약의 방법, 대금지급 방법 등 일반적 내용은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및 조달사업법령 등에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우선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 그간의 추진실적

- 공공기관에게 일정 비율(50%) 이상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 제고
 - (구매기관) ('08) 163 → ('10) 204 → ('12) 495기관
 - (구매실적) ('08) 61.3(60.7%) → ('10) 66.9(64.1%) → ('12.11) 59.2(67.6%)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
 - (구매실적) ('08) 1.7(6.9%) → ('10) 1.4(7.5%) → ('12.11) 1.6조원(8.2%)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기술개발제품 구매 권고)